

중부고고학회 2018-1차 운영위원회 · 평의원회 회의 결과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16:00~17:00

장 소 : 안양 인덕원역(4호선) 인덕활어회

참석자 : **회장** 김길식, **부회장** 홍형우

기획위원 송만영, 이형원, **출판위원** 신희권, 김대환, **정보위원** 심재연,
총무위원 강병학, **총무간사** 여희진, **출판간사** 박경남

평의원회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17:00~18:00

장 소 : 안양 인덕원역(4호선) 인덕활어회

참석자 : **회장** 김길식, **부회장** 홍형우

평의원 박경신, 신희권, 심재연, 정해득, 차재동, 서길덕, 이동성, 이정철,
이형원, 홍형우, 황정욱

배석자 : **기획위원** 송만영, 이형원, **정보위원** 심재연, **총무위원** 강병학,
총무간사 여희진, **출판간사** 박경남

중 부 고 고 학 회

- 목 차 -

I. 업무보고	1
1. 일반현황	1
1) 회원현황	1
2) 임원현황	1
3) 편집위원회 현황	2
4) 정회원 명단	2
5) 재정	5
6) 4대 집행부(2016~2017) 학술지원금 현황	5
2. 업무보고	6
1) 2017년 학술대회	6
2) 학술지·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6
3) 운영위원회 및 평의원회 활동	7
II. 의결(논의) 안건	8
1. 2018년도 중부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안)	8
2. 2019년도 중부고고학회 1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안)	9
3. 2018년도 사업 예산	10
4. 기타 안건	10
붙임 1. 2017년 중부고고학회 예산 결산(2017.1.1.~2018.1.5.)	11
붙임 2. 2018년 중부고고학회 예산 결산(2018.1.5.~2.1.)	12
붙임 3. 2018년도 사업예산 계획(안)	13
붙임 4. 중부고고학회 윤리규정	14
붙임 5. 중부고고학회 회칙	16
붙임 6. 운영예규	20

I. 업무보고

1. 일반현황

1) 회원현황

(2018.1.5. 인수인계)

구 분	총 원	개인회원	기관회원	정회원
회원수	379(170)	185	65	129(56)

* 379명은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인원 / 170명은 2017년도까지 회비를 납부한 인원임.

(2018.2.2. 기준)

구 분	총 원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회원수	437(144)	128(64)	216(33)	29(4)	-	64(43)

* 437명 중 홈페이지 회원가입 인원 383명(정회원 중 73명 가입, 55명 미가입).

* (144)명은 2017년도 및 현재(중신회원 포함)까지 회비를 납부한 인원임.

2)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회 장	김 길 식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부회장	홍 형 우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평의원 겸직	
감 사	박 영 구	강원원주대학교 박물관		
평의원 (16→12명)	박 경 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1.1.~ 2018.12.31.	
	서 봉 수	(재)백두문화재연구원		
	신 희 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심 재 연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정 해 득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2018.1.1.~ 2019.12.31.	
	차 재 동	(재)국강고고학연구소		
	서 길 덕	(재)한성문화재연구원		
	이 동 성	(재)기남문화재연구원		
	이 정 철	한양대학교 박물관		
	이 형 원	한신대학교 박물관		
	홍 형 우	강원원주대학교 사학과		
	황 정 욱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운영 위원	총 무	강 병 학	(재)한양문화재연구원	
	기 획	송 만 영	송실대학교 사학과	
		이 형 원	한신대학교 박물관	평의원 겸직
	출 판	신 희 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평의원 겸직
	정 보	김 권 중	(재)중부고고학연구소	
심 재 연		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평의원 겸직	
간사	총 무	여 희 진	(재)한양문화재연구원	
	출 판	박 경 남	연세대학교 사학과	

3) 편집위원회 현황

직책	성명	소속	지역	비고
편집위원장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연임
편집위원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서울·경기	신임
편집위원	최승엽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	신임
편집위원	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충청	신임
편집위원	김승욱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호남	연임
편집위원	김대환	국립중앙박물관	영남	신임
편집위원	김경주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	연임
편집위원	成璟瑯	중국 길림대학교	해외	연임

4) 정회원 명단(128명) - 온라인 미가입 회원님들께 회원가입 요청 드립니다.

인준시기	연번	성명	회비납부	비고
1대 집행부 (2010- 2011)	1	고동순		온라인 가입×
	2	권순진		온라인 가입×
	3	권오영		
	4	김경중		
	5	김권중		
	6	김규호		
	7	김길식		
	8	김성태		1·2대 중복
	9	김장석		
	10	김종일		온라인 가입×
	11	노혁진		
	12	박준범		
	13	박성우		
	14	박성희		
	15	박영구		
	16	박희현		온라인 가입×
	17	배기동		온라인 가입×
	18	백홍기		온라인 가입×
	19	서영일		
	20	성춘택		
	21	송만영		
	22	신숙정		
	23	심재연		
	24	안신원		온라인 가입×
	25	오강원		
	26	유태용		
	27	이기성		
	28	이남규		
	29	이선복		온라인 가입×
	30	이성주		
	31	이숙임		
	32	유재춘		온라인 가입×
	33	윤석인		

1대 집행부 (2010- 2011) 47명	34	정원철		
	35	조원창		온라인 가입×
	36	지현병		온라인 가입×
	37	최병현		
	38	최복규		온라인 가입×
	39	최승엽		
	40	최종모		온라인 가입×
	41	하문식		온라인 가입×
	42	한성욱		
	43	황재훈		
	44	허진아		온라인 가입×
	45	홍성익		온라인 가입×
	46	홍은경		
	47	홍주희		
2대 집행부 (2012- 2013)	48	강병하		
	49	강인욱		온라인 가입×
	50	고재용		
	51	구자린		온라인 가입×
	52	권도희		
	53	김기섭		
	54	김기태		온라인 가입×
	55	김기호		온라인 가입×
	56	김남돈		온라인 가입×
	57	김대환		온라인 가입×
	58	김무중		
	59	김병희		
	60	김선주		온라인 가입×
	61	김성수		온라인 가입×
	62	김성태		1·2대 중복
	63	김아관		
	64	김왕국		온라인 가입×
	65	김일규		온라인 가입×
	66	김진영		온라인 가입×
	67	김태식		온라인 가입×
	68	김한상		온라인 가입×
	69	김홍식		온라인 가입×
	70	문은숙		온라인 가입×
	71	박상국		온라인 가입×
	72	박성상		온라인 가입×
	73	박수영		온라인 가입×
	74	박종섭		온라인 가입×
	75	방유리		
	76	백종호		온라인 가입×
	77	박진일		온라인 가입×
	78	서길덕		2·4대 중복
	79	서봉수		
	80	소상영		
	81	신연식		
82	신창수		온라인 가입×	
83	심광주			
84	양시은			
85	오승환		온라인 가입×	

2대 집행부 (2012- 2013) 66명	86	이동성		
	87	이명희		온라인 가입×
	88	이상수		온라인 가입×
	89	이승원		온라인 가입×
	90	이인숙		
	91	이재희		온라인 가입×
	92	이정철		
	93	이종수		온라인 가입×
	94	이창엽		온라인 가입×
	95	이창현		
	96	이해용		
	97	이형원		
	98	임영호		
	99	임영근		온라인 가입×
	100	장기경		온라인 가입×
	101	장명수		온라인 가입×
	102	정연우		온라인 가입×
	103	정일동		온라인 가입×
	104	정창희		온라인 가입×
	105	차운환		온라인 가입×
	106	차재동		
	107	한관희		온라인 가입×
	108	한준영		
	109	현남주		
110	홍순옥		온라인 가입×	
111	홍형우			
112	홍진호		온라인 가입×	
113	황보경			
114	황정옥			
3대 집행부 (2014- 2015) 11명	115	김현준		
	116	박경신		
	117	박천택		
	118	신희권		
	119	안성현		
	120	유은식		
	121	이혁희		
	122	이후석		
	123	정치영		
	124	정해득		
	125	최영민		
4대 집행부 (2016- 2017) 4명	126	김도훈		
	127	강태홍		
	128	라경화		
	129	박중균		
	130	서길덕		2·4대 중복

5) 재정

구 분	총 액(원)	세 부(원)	
4대집행부 (기준:2018.1.5.)	33,138,102	정기예금	20,271,466
		입 출 금	12,652,746
		현 금	213,890
5대(현) 집행부 (기준:2018.2.1.)	34,147,593	입 출 금	34,091,703
		현 금	55,890
비 고	2018년 1월 5일 인수인계 현황 및 2018년 2월 1일 재정 현황		

- 붙임 1. 2017년도 예산 결산 자료(2017. 1. 1. ~ 2018. 1. 5) - p.11

- 붙임 2. 2018년도 예산 결산 자료(2018. 1. 5. ~ 2018. 2. 1) - p.12

6) 4대 집행부(2016~2017) 학술지원금 현황 (계 : 49,000,000원)

연 번	지원기관	지원일시	지원액수(원)
1	한강문화재연구원	02.22	2,000,000
2	한백문화재연구원	02.23	1,000,000
3	중앙문화재연구원	02.24	3,000,000
4	국방문화재연구원	02.29	2,000,000
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03.08	1,000,000
6	대한문화재연구원	03.08	2,000,000
7	기호문화재연구원	03.10	1,000,000
8	한성문화재연구원	03.16	1,000,000
9	고려문화재연구원	03.25	1,000,000
10	강원문화재연구소	03.29	1,000,000
11	한울문화재연구원	03.31	1,000,000
12	한양문화재연구원	04.22	1,000,000
13	예맥문화재연구원	04.25	1,500,000
1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02.18	1,000,000
15	기남문화재연구원	06.01	1,000,000
16	중부고고학연구소	08.16	3,000,000
17	겨레문화유산연구원	10.11	1,000,000
18	백두문화재연구원	11.07	1,000,000
19	국강고고학연구소	11.09	1,000,000
20	한성백제박물관	유적조사발표 인쇄비 지원	2,500,000
합 계			29,000,000

연 번	기원기관	지원일시	지원액수(원)
1	한강문화재연구원	02.21	2,000,000
2	한백문화재연구원	02.24	1,000,000
3	국강고고학연구소	02.24	1,000,000
4	겨레문화유산연구원	02.24	1,000,000
5	중앙문화재연구원	02.28	3,000,000
6	고려문화재연구원	03.07	1,000,000
7	한양문화재연구원	03.10	1,000,000
8	국방문화재연구원	03.13	2,000,000
9	한국문화유산연구원	03.14	1,000,000
10	강원문화재연구소	03.14	1,000,000
11	기호문화재연구원	03.17	1,000,000
12	예맥문화재연구원	05.31	1,000,000
13	중부고고학연구소	06.28	2,000,000
14	한성백제박물관	유적조사발표 인쇄비 지원	2,000,000
합 계			20,000,000

2. 업무보고

1) 2017년 학술대회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제	내 용
정기학술대회	2017.06.02 금요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	북한강유역의 원삼국~한성백제기 주제발표(취락, 유물) 및 토론
	기초발표 : 김무중(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문화양상) 발표 1 : 김준규(북한강유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토기 편년 시론) 발표 2 : 최영민(원삼국~한성백제기 북한강유역 철기문화의 양상) 발표 3 : 권도희(원삼국~한성백제기 낙랑계 토기 및 철기에 대하여) 발표 4 : 강세호(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와 취락구조) 발표 5 : 박중국(원삼국~한성백제기 북한강유역의 취락 편년) 토 론 : 유은식, 김상민, 김기욱, 박경신, 심재연			
유적조사발표회	2017.12.08 금요일	한성백제박물관	중부지역 발굴성과	2017년도 중부지역 발굴성과
발표 : 14개소 유적 / 수록 : 20개소 유적 (합계 : 34개소 유적)				

2) 학술지·학술대회 자료집 발간

(1) 학술지 발간

- 『고고학 16-1호』 : 2017.04.30. 발간, 발송 완료
- 『고고학 16-2호』 : 2017.08.30. 발간, 발송 완료
- 『고고학 16-3호』 : 2017.12.30. 발간, 발송 완료

* 『고고학 17-1호』 : 4편 접수, 심사예정, 2017.04.30. 발간(1월 31일까지 마감)

(2) 학술대회 자료집

- 『북한강유역 원삼국~한성백제기 물질문화』 : 06월 1일 발간
- 『2017년 중부지역 발굴성과』 : 12월 8일 발간

3) 운영위원회 및 평의원회 활동

	회차	일시	장소	안건
운영 위원회	1회	2017.02.10	원주 상하이문 중식당	2017년 학회 운영 방안 논의
	2회	2017.12.08	서울 마실 한정식	학회 운영 현황 논의
	회차	일시	장소	안건
평의원회	1회	2017.02.24	춘천 보릿고개	학회 현황 보고 및 학회활동 보고
	2회	2017.12.08	서울 마실 한정식	학회활동 보고 평의원 추천 학회 임원 추천
5대 운영진 예비모임		2017.12.27	중부고고학연구소 회의실	중부고고학회 현안과 문제점 해결방안 (김길식, 홍형우, 강병학, 김권중, 이형원)
운영진 업무인수인계		2018.01.05. 2018.01.11.	강원대학교 박물관	4대 → 5대 업무인수인계 (4대-김남돈, 박영구, 심미경) (5대-김길식, 강병학, 여희진) 2014년 이후자료 16박스 인수
기획위원 사전모임		2018.01.25	안양 인덕활어회	2017년 학술대회 및 사업기획 구성 (김길식, 송만영, 이형원, 강병학)

II. 의결(논의) 안건

1. 2018년도 중부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안) - 원안대로 가결

- 기획 의도: 2010년(1회)과 2011년(3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을 다룬 바 있어, 역으로 중부지방 물질문화의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각 시대별 물질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이해함으로써 중부지역 고고학 연구를 1단계로 요약시키는 계기 마련

- 논의할 내용: ① 시대별 고고학 물질문화의 지역성과 내용
- ② 지역성과 지역집단의 상관성 검토
- ③ 통시적 관점에서의 지역성의 변화

- 발표안: 구석기시대 ~ 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성 사례 검토

■ 주제 :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 10:00시~18:00시

■ 장소 :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사회 : _____

■ 개회사 10:00 ~ 10:10 김길식(중부고고학회장)

■ 축사 10:10 ~ 10:20 김상태(국립춘천박물관장) / 서영일(중문협회장)

■ 휴식(장내정리) 10:20 ~ 10:30

■ 오전 주제발표

◆ 제1발표 10:30 ~ 11:00 석기공작으로 본 중부지역 구석기문화의 지역성(최승엽, 이정철, 성춘택)

◆ 제2발표 11:00 ~ 11:30 중부지역 빗살무늬토기와 지역성(구자진, 소상영, 홍은경)

◆ 제3발표 11:30 ~ 12:00 중부지역 무문토기 문화유형과 지역성(홍주희, 김권중, 정원철)

■ 중식 12:00 ~ 13:00

사회 : _____

■ 오후 주제발표

◆ 제4발표 13:00 ~ 13:30 원삼국시대 마한과 중도유형문화(박중국, 박경신, 심재연)

◆ 제5발표 13:30 ~ 14:00 백제 중앙과 지방문화의 지역성(김왕국, 정치영, 조가영)

◆ 제6발표 14:00 ~ 14:30 신라 중앙과 중부지역 문화의 비교(황보경, 박천택)

◆ 제7발표 14:30 ~ 15:00 고려·조선시대 물질문화의 지역성(이희인, 정해득)

■ 휴식(장내정리) 15:00 ~ 15:20

◆ 지정 및 종합토론 15:20 ~ 17:30

좌장 : 이남규(한신대학교)

토론 : 상기 발표 후보자 중 예정

■ 기념촬영 17:30 ~ 18:00

■ 만찬 18:00 ~

2. 2019년도 중부고고학회 1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안) - **원안대로 가결**

- 기획 의도

- ▷ 중부고고학회 발족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 ▷ 회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만한 통시대적(구석기-조선) 쟁점 주제 선정
- ▷ 근·현대고고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고고학의 외연 확대

■ 주제 : **쟁점** 중부고고학, 무엇이 중요한가?

■ 일시 : 2019년 5월 말 ~ 6월 중순 09:30 ~ 19:00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한양대학교 등

사회 : _____

■ 오전 주제발표

- ◆ 제1발표 09:30 ~ 10:00 중부지역 구석기 고고학의 쟁점 (성춘택)
- ◆ 제2발표 10:00 ~ 10:30 중부지역 신석기 고고학의 쟁점 (소상영)
- ◆ 제3발표 10:30 ~ 11:00 춘천 중도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성과와 연구 쟁점 (정원철)
- ◆ 제4발표 11:00 ~ 11:30 점토대토기문화와 초기철기시대 연구의 쟁점 (서길덕)
- ◆ 제5발표 11:30 ~ 12:00 원삼국시대 낙랑과 중부지역 정치체의 상호작용 (심재연)

■ 중 식 12:00 ~ 13:30

사회 : _____

■ 개회사 13:30 ~ 13:40 김길식(중부고고학회장)

■ 축 사 13:40 ~ 13:50 노혁진(중부고고학회 초대회장) / 배기동(국립중앙박물관장) / (중문협 협회장)

※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 한양대학교총장 또는 박물관장

■ 휴식(장내정리) 13:50 ~ 14:00

■ 오후 주제발표

- ◆ 제6발표 14:00 ~ 14:30 삼국 각축장(삼국 문화의 교차지) 중부지역 (김길식)
- ◆ 제7발표 14:30 ~ 15:00 통일신라 치소성의 분포와 운영 (심광주)
- 휴 식 15:00 ~ 15:20
- ◆ 제8발표 15:20 ~ 15:50 고려 ~ 조선 왕릉 고고학의 쟁점 (정해득)
- ◆ 제9발표 15:50 ~ 16:20 근·현대 고고학 : 유적 조사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최중규)

■ 휴식(장내정리) 16:20 ~ 16:30

◆ 지정 및 종합토론 16:30 ~ 18:30

좌장 : 이남규(한신대학교)

토론 : 지정토론자(선사-이형원, 고대-권오영, 중세이후-최태선), 발표자 9명

■ 기념촬영 18:30 ~ 19:00

■ 만찬 19:00 ~

3. 2018년도 사업 예산 - 원안대로 가결

- 붙임 3. 2018년도 사업예산 계획(안) 참조 - p.13

4. 기타 안건

1) 중부고고학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 원안대로 가결

- 고유번호증 발급(호서고고학회 등)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임원(운영)진 교체 시 통장개설 등의 불필요한 업무 해소

2) 중부고고학회 윤리규정 개정 - 원안대로 가결

- 제6조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연구재단’ 으로 명칭 변경
- 붙임 4. 중부고고학회 윤리규정 - p.14

3) 학술발간자료 전자파일 회원 서비스(홈페이지) - 기존대로 유지(회비납부 독려

및 현 홈페이지 시스템상 불가)

- 현재 당해 연도 회비 미납시 전체자료 다운로드 불가능
- 회원 불만사항(회비 납부년도라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요청)

4) 회칙 및 운영예규 개정 사항(논의) - 추후 별도 논의

- 붙임 5. 중부고고학회 회칙 - p.16
- 붙임 6. 운영예규 - p.20

5)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 원안대로 가결

- 회원들의 의견 취합 후 기획<기획의원>

6) 간사 수당 인상 건 - 원안대로 가결

- 2월부터 45만원 지급 / 기존 대비 월 5만원 인상

붙임 1. 2017년 중부고고학회 예산 결산

단위: 원 (2017. 1. 1 ~ 2018. 1. 5 기준)

수입				지출							
항목	적요	금액		항목	적요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2016년도)	통장	23,736,163	44,122,259	1. 운영비	홈페이지 제작비	3,200,000	4,328,600				
	현금	114,630			홈페이지 도메인 청구비	1,128,600					
	정기예금	20,271,466		2. 인쇄비	고고학 15-3호	1,513,000	9,367,000				
2. 회비	개인회비 (학생회원2명)	2,160,000	고고학 16-1호		2,584,000						
	기관회비	900,000	고고학 16-2호		2,006,000						
	종신회비	2,500,000	고고학 16-3호		3,264,000						
3. 지원금	학술지원비*	18,000,000	3. 발송료	학술지원 및 정선서 공문 발송	14,830	1,282,280					
4. 원고 게재료	고고학 16-1호	300,000		정기학술대회 관련 공문 발송	21,230						
	고고학 16-2호	575,000		학보(발송, 신규회원, 국회도서관) 및 학술대회 자료집 발송	109,680						
	고고학 16-3호	1,050,000		고고학 15-3호	258,670						
5. 교보문고 인쇄권		1,221,959		고고학 16-1호	272,500		4. 심사료	고고학 16-2호	286,480	1,980,000	
6.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판매비	현장		1,090,000	고고학 16-3호			312,780	고고학 15-3호		270,000
		우편		200,000	기타			6,110	고고학 16-1호		630,000
	주치권 판매비	55,000		고고학 16-2호	270,000		고고학 16-3호	810,000			
7.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자료집 판매비	440,000		5. 회의비	운영위원회(2.10), 평의원회의 (2.24)		493,000	6. 출장비	운영위원회(2.10), 평의원회의 (2.24)	630,000	
	주치권 판매비	0		6. 행사진행비 (2017.6.2. 정기학술대회)	숙박비		350,000		7. 행사진행비 (2017.6.2. 정기학술대회)	교통비	93,400
8. 기 타	학연문화사 택배비 입금	3,500	8.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2017.12.8)	식사비	1,090,000	3,815,482	발표비·토론비·진행사회비	3,000,000			
	유적조사발표회 점심남은 돈 입금	6,000		제작비(자료집, 현수막, 배너)	2,199,000						
	예금이자	25,206		다과비	108,220						
	기 타	3,000		주차권 구입	60,000						
◎ 수입				8.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발표회 (2017.12.8)	인건비(발표비·진행사회비)		1,500,000	3,815,482			
* 학술지원비 : 한강문화재단연구원, 한백문화재단연구원, 국강고고학연구소, 고려문화유산연구원, 중앙문화재단연구원, 고려문화재단연구원, 한양문화재단연구원, 국방문화재단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강원문화재단연구소, 기호문화재단연구원, 예맥문화재단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제작비(자료집, 현수막, 배너)		1,013,632				
◎ 지출				9. 경조비*	300,000		9. 물품비	학보포장 양면테이프 구입	13,000		
* 경조비 :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동해 삼화사와 고려고분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축하 화환 (6.15)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한강과 마을의 흔적' 특별전 축하 화환 (9.14) - 제11회 화성시 역사문화 학술세미나 '화성지역 고대 문화의 재양상' 축하 화환 (11.9)				10. 간사수당	10,400,000	11. 기타		결산소득세	3,510		
수입 총액		28,529,665		지출 총액			39,513,822				
잔 액		2016년 12월 이월금 (44,122,259) + 수입총액 (28,529,665) - 지출총액 (39,513,822) = 33,138,102									
(수입총액 - 지출총액)		정기예금: 20,271,466 통장: 12,652,746 현금: 213,890									

붙임 2. 2018년 중부고고학회 예산 결산

단위: 원 (2018. 1. 5 ~ 2. 1 현재)

수 입				지 출					
항 목	적 요	금 액		항 목	적 요	금 액			
1. 전년도 이월금 (2017년도)	정기예금 통장	20,271,466	33,138,102	1. 발송료	학보재발송 (국회도서관)	6,650	17,100		
	입출금 통장	12,652,746			학보재발송 (김호준외 2인)	10,450			
	현금	213,890		2. 회의비	인수인계 (2018.1.5)	258,000	410,000		
2. 회비	개인회비	550,000	기획위원 예비모임 (2018.1.25.)		152,000				
	기관회비	250,000	3. 출장비	학보인수 (강릉→군포) (2018.1.11)	99,700				
	종신회비	1,500,000		2,300,000	4. 물품비	물품구입 (상장용지 외2건)	32,920		
3. 예금이자 (해지이자)	정기예금 통장	68,741	69,211	5. 간사수당		출판간사 (2018.01)	400,000	800,000	
	입출금 통장	470			총무간사 (2018.01)	400,000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2,369,211			1,359,720				
잔 액		2017년 12월 이월금 (33,138,102) + 수입총액 (2,369,211) = 35,507,313 - 지출총액 (1,359,720) = 34,147,593							
비 고		입출금통장: 34,091,703 현금: 55,890							

붙임 3. 2018년도 사업예산 계획(안)

2018년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세부항목	금 액	합 계	
수 입	이 월 금	이월금	33,138,102	33,138,102	
	학 보	계재료	2,000,000	2,100,000	
		판매	100,000		
	회 비	기관일반회원	500,000	9,500,000	
		기관종신회원	1,000,000		
		개인일반회원	4,000,000		
		개인종신회원	4,000,000		
	지 원 금	학술지원비	25,000,000	25,000,000	
	학술대회	자료집 판매	2,000,000	2,000,000	
	교보문고전자인세		1,400,000	1,400,000	
총 수입액				73,138,102	
구 분	내 역	세부항목	금 액	합 계	
지 출	운영비	총무간사(12개월) 편집간사(12개월)	9,600,000	13,600,000	
		경조비	500,000		
		출장비	1,000,000		
		회의비	2,000,000		
		예비비	500,000		
	학보발간(3회)	심사료	2,000,000	12,000,000	
		발송료	1,000,000		
		인쇄비	9,000,000		
	학술대회 유적조사발표회	발표비 출장비	5,000,000	14,000,000	
		인쇄비	4,000,000		
		식비 및 숙박비	3,000,000		
		장소임대료	1,000,000		
		기타운영비	1,000,000		
	총 지출액				39,600,000
	잔 액				33,538,102

중부고고학회 윤리규정

2010년 03월 22일 제정

2018년 02월 0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중부고고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 및 연구, 그리고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학회의 활동과 회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2조(학회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사회 및 학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기본적 사회질서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본 학회의 사업과 기타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존중하고 연구와 출판에 있어서 표절 및 중복게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3조(표절의 의미와 유형) 본 학회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 성과 및 아이디어를 명확한 출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의 범위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저작에 포함된 ‘연구결과’ ‘문구’ ‘원 자료 및 가공되거나 분석된 데이터’ ‘연구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 등이 적절한 학술 인용방식에 맞지 않게 인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와 판정)

1.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는 학회에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학회장·편집위원장·윤리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 부재 시 제소판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1. 윤리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서면 또는 직접 출석에 의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본 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윤리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년간 투고금지’, ‘계재 취소와 계재논문목록에서 삭제’, ‘학회제명’,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제재 및 조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개정) 이 윤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평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거쳐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와 함께, 2010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중부고고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중부고고학회(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라고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고고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중부지방의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2. 학술지 발간
3.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4 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내외에 고고학 관계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고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중, 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5.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③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운영

제 5 조(조직)

본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1.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개정, 사업,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2.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 평의원 및 감사를 인준한다. 인준이 부결될 경우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을 인준한다.
 4.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회원 징계안을 인준한다.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7 조(임원)

-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원,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되며,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평의원회를 주재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
-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8 조(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③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평의원회의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
 2. 회장, 부회장, 평의원, 감사 및 정회원의 추천
 3. 학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운영예규에 관한 사항
 5.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획, 출판,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이 담당한다.
- ② 편집위원은 6인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보, 학술 발표회 요지 발간과 논문심사 등의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제 11 조(의결)

-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단, 회원징계안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위임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 12 조(출판)

- ① 본 회 학보의 명칭은 ‘고고학(Archaeology)’ 으로 한다.
- ② 학보는 1년 2회 이상 발간한다.
- ③ 게재논문은 본 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것을 수록한다.
- ④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⑤ 본 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회에 속한다.

제 13 조(학술대회)

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14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중부지방에 둔다.

제 3 장. 재정

제 15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학회발간물의 판매수익금
- 3. 연구보조금
- 4. 기타

제 16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4 장. 운영내규 등

제 17 조(운영예규)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8 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 ① 중부고고학회는 강원고고학회와 서울경기고고학회가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자로 출범하였으며, 기존 강원고고학회 및 서울경기고고학회의 회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다.
- ②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운영예규

■ 제 1 장 회의 소집

제 1 조 (회의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2 장 학보의 발간

제 2 조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조건)

학보의 게재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내용
2.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

제 3 조 (학보의 발간 및 원고 선정)

- ① 학보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보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각 연구분야별 논문심사위원으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을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 ③ 논문 투고 및 심사, 그리고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 4 조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 ①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히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②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이양할 때 심사내용부분은 별도 보관하고 차기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차기집행부도 위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5 조 (원고 집필 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학회간행물의 기증

제 6 조 (학회 간행물의 기증 대상)

학회 간행물을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의 자료교환기관

2.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 재정후원기관
4.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

제 7 조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방법)

- ① 우리 학회로 재정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지원액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기증권수를 결정한다.
 2. 발간학보 및 현수막에 지원처를 명시한다.

■ 제 5 장 경비의 지출

제 8 조 (경비 진행)

- ①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학보게재원고에 대하여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 ③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다.

■ 제 6 장 기타

제 9 조 (학보와 소식지 배포)

- ① 학보는 당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식지는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제 10 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칙

본 운영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